

무배당 The 하나 연금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The 하나 연금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22년 12월 12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The 하나 연금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종목		
무배당 (①)The 하나 연금보험		1형(기본형), 2형(무사망급부형)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정액형	10년보증, 20년보증, 30년보증,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 기대여명보증
	활동기집중형	20년보증

- ※ 동 상품은 상품 명칭에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①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 ※ 종신연금형 정액형에서 '기대여명'이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 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말하며, 가입시점 기대여명표의 연금지급개시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함. 다만,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5년으로 함.
- ※ 부부연금형에서 100세보증형 및 기대여명보증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을 보증기간으로 산출한 연금을 지급한다.

2. 연금지급개시나이,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연금지급개시나이, 보험기간 및 가입나이

구분		1형(기본형)	2형(무사망급부형)
연금지급개시나이(Y)		45세 ~ 85세 (다만, 부부연금형의 경우 48세 ~ 85세)	
보험 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부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Y)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Y) 계약해당일부부터 종신까지	
가입나이		만 15세 ~ (Y-M-최소거치기간)세 (최대 70세)	0세 ~ (Y-M-최소거치기간)세 (최대 75세)

- ※ 연금개시나이는 가입후 납입기간이 지난 이후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나이는 해당 연금지급개시나이의 최고 가입나이를 초과 할 수 없음

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1형(기본형)	2형(무사망급부형)
보험료 납입기간(M)	3/5/7/10/15/20년납, 전기납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 ※ 다만, 전기납의 경우 10년을 최소 납입기간으로 함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한다.

(1) 1형(기본형)

납입기간	기본보험료	최소거치기간
3년납	35만원 이상	3년
5년납	20만원 이상	3년
7년납	10만원 이상	3년
10년납이상	10만원 이상	-

(2) 2형(무사망급부형)

납입기간	기본보험료	최소거치기간
3년납	30만원 이상	2년
5년납	10만원 이상	2년
7년납	10만원 이상	2년
10년납이상	10만원 이상	-

나. 추가납입보험료

- (1) 보험기간(연금개시후 보험기간 포함) 중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2) 1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연금개시시점에 노후자유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text{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200\%} - \text{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text{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 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가 3년납의 경우 50만원, 5년납 이상의 경우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을 적용한다.

매월 기본보험료	기본보험료 할인금액		
	3년납	5년납	7년납이상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	기본보험료 중 30만원 초과부분의 1.5%	기본보험료 중 30만원 초과부분의 2.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기본보험료 중 50만원 초과부분의 1.0%	3,000원+ 기본보험료 중 50만원 초과부분의 2.50%	4,400원+ 기본보험료 중 50만원 초과부분의 2.60%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5,000원+ 기본보험료 중 100만원 초과부분의 1.25%	15,500원+ 기본보험료 중 100만원 초과부분의 3.00%	17,400원+ 기본보험료 중 100만원 초과부분의 3.70%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54,400원+ 기본보험료 중 200만원 초과부분의 3.00%
300만원 초과		75,500원+ 기본보험료 중 300만원 초과부분의 2.00%	84,400원+ 기본보험료 중 300만원 초과부분의 2.00%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점에 '기본보험료 할인형' 또는 '보험료 할인금액 가산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 '기본보험료 할인형'의 경우 기본보험료에서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을 할인하여 영수한다.

라. '보험료 할인금액 가산형'의 경우 보험료를 납입할 때(선납을 할 때에는 해당 납입회차 계약해당일) '가'에 따른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을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여 적립한다.

마.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을 이유로 기본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 기준으로 '가' 내지 '라'를 적용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해당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 32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0.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연 12 회에 한하여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1 회 인출 최고 한도는 인출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하고, 계약 후 경과기간 10 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이 200 만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및 보험료할인금액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및 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유지보너스 포함)에서 인출할 수 있다.

다. 계약자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보장계약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다.

라.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의 '가'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적립액 인출 당시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잔여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의 월대체보험료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연금계약에 적용하는 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가'의 공시이율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 일 적용한다.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한다.

다.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 (1)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text{내부지표} \times (1 - \alpha) + \text{외부지표} \times \alpha$$

(2) 내부지표

(가) 내부지표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내부지표}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times 100$$

- (주) 1. I : 산출시점 직전 12 개월간 투자 영업수익 (보험금융수익 제외)
 2. E : 산출시점 직전 12 개월간 투자 영업비용 (보험금융비용 제외)
 3. A_{12} : 산출시점 직전 13 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A_0 : 산출시점 직전 1 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나)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다) 내부지표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을 헛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3) 외부지표

(가) 외부지표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 = \text{국고채(5년)수익률} \times \beta_1 + \text{회사채(무보종 3년, AA-)수익률} \times \beta_2 + \text{통화안정증권(1년)수익률} \times \beta_3$$

(주) 국고채 가중치, 회사채 가중치, 통화안정증권 가중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beta_1 : \text{국고채 가중치} = \frac{a}{a + b + c}$$

$$\beta_2 : \text{회사채 가중치} = \frac{b}{a+b+c}$$

$$\beta_3 :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 = \frac{c}{a+b+c}$$

- a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나) 국고채(5년) 및 회사채(무보증 3년, AA-)와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년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다) 세부 지표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4) 내부지표와 외부지표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의 가중치}(\alpha) = \frac{A/B + C}{A + C}$$

$$\text{내부지표의 가중치}(1 - \alpha) = 1 - \frac{A/B + C}{A + C}$$

- A :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보험료수입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보험료수입」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 「보험료수입」은 1년간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

라.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한다.

마. ‘나’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나’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바.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영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영세칙을 따른다.

사.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이전에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상속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도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나.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 다. 계약자는 ‘가’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해당월의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14.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시점이 지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일시중지 신청 가능 시점
5년납	3년
7년납	4년
10년이상(다만, 전기납 제외)	5년
3년납, 전기납	신청불가

- 나. ‘가’의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이후의 납입기일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된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에 따라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나이가 연금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완료시점 이후 최초로 돌아오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된다.
- 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 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라.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가능횟수는 총 5회를 한도로 하며, 1회 신청당 12개월(최소 3개월)을 최고 한도로 한다. 또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누적하여 36개월(기본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의 신청은 월단위로 가능하다.
- 마.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바. 회사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의 종료(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신청으로 인한 월대체보험료가 해약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5.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계약자의 신청에 따른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16. 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일 이후 3 년이 경과하고 아래의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도달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유지보너스 해당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 추가로 적립한다.

유지보너스 발생일	유지보너스 해당금액		
	3년납	5년납	7년납이상
36 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액의 0.6%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액의 0.8%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액의 0.8%
60 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액의 1.0%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액의 3.0%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액의 3.0%
120 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액의 2.0%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액의 3.0%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액의 3.2%

※ 해당일*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중에는 실제 납입일(선납시 해당회차 월계약해당일)을 말하며, 납입완료 후에는 월계약해당일을 말한다.

※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유지보너스 포함)에 한하여 계산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연금개시일 포함)에 한하여 적립한다.

17. 노후자유자금에 관한 사항

가. ‘노후자유자금’이란 ‘노후자유자금(연금개시시점)’과 ‘노후자유자금(연금개시시점 이후)’을 지칭한다. ‘노후자유자금(연금개시시점)’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자유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노후자유자금(연금개시시점 이후)’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에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있을 경우에는 노후자유자금에 추가납입보험료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합산하고, 노후자유자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노후자유자금에 인출금액만큼 차감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노후자유자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한다.

다.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가’의 노후자유자금선택비율을 0% ~ 50% 범위내에서 5%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라. 노후자유자금을 선택한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자유자금(연금개시시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지급하고, 노후자유자금선택비율이 0%인 경우(노후자유자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포함)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전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지급한다.

마.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이후 노후자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년도 기준 연 12 회에 한하여 노후자유

자금의 범위내에서 노후자유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금액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확정연금형의 만기일(확정연금의 최종 지급일)이 된 경우에는 잔여 노후자유자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8.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 전환에 관한 사항

가.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의 피보험자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이하 '배우자 또는 자녀'라 한다)에 한하며, 연금전환 신청 당시 배우자 또는 자녀의 나이가 45세 이상 80세 이하 이어야 한다.

나.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의 가입나이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 이 특약으로 전환시 전환일 기준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므로 전환전계약 체결시 해당특약의 적용기초율(위험률,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사업비율)과 전환시점의 적용기초율은 다를 수 있다.

라. '다'에도 불구하고 종신연금형의 경우 전환전계약 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환시점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이 큰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19.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연금지급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계약자는 가입시에는 연금지급형태 중 종신연금형만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 및 노후자유자금 선택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2) 변경가능한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정액형	10년보증, 20년보증, 30년보증, 100세((100-연금개시나이)년)보증, 기대여명보증
	활동기집중형	20년보증
확정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100-연금개시나이)년)확정)		
상속연금형		

(3) 노후자유자금선택비율: 0% ~ 50% 범위(다만, 5% 단위로 선택 가능)

(4) 활동기집중형을 선택하는 경우 집중지급기간(5년, 10년) 및 지급배수(3배, 5배)를 선택해야 하며, 연금지급개시 후에는 집중지급기간 및 지급배수를 변경할 수 없다.

(5)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기간

구분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Y)	45 세 ~ 85 세	48 세 ~ 85 세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Y)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Y) 계약해당일부터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00-연금개시나이)년까지 상속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Y)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다. 조기연금개시 옵션에 관한 사항

(1)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연금개시나이 이전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조기연금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가) 계약일 이후 10년이 지난 계약 또는 납입이 완료된 계약

(나)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추가납입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도 감액하여 적용. 이하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의 100%이상인 경우

(2) 조기연금개시 신청시 정하는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는 35세 이상 85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나이는 45세 이상 85세 이하(부부연금형의 경우 48세 이상 85세 이하) 이어야 한다.

(3) 조기연금개시시점은 조기연금개시나이에 해당하는 연계약해당일부터 연금을 지급하며, 조기연금개시시점에도 ‘(1)’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한다.

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1,000 원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0 원)으로 한다.

마.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바.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1)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 4-14 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온라인 채널 제외)으로 한다.

(2) 이 보험의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 대비 95%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사. 생존연금(종신연금형) 지급에 관한 사항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자유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

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

회사는 보험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차감금액(계약관리비용)과 기본보험료의 차감금액(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의 합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자. 추가납입보험료의 자동이체서비스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 피보험자 변경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로운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
 - (가)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법인이며 계약자가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고 계약체결시점 피보험자가 해당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인 경우
 - (나) 변경 전 피보험자가 퇴직하는 경우
 - (다) 새로운 피보험자가 계약자인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인 경우
 - (라) 이 계약의 체결시점 기준 새로운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2) (1)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 변경신청을 승낙한 경우 피보험자 변경일은 피보험자 변경신청을 승낙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이하 '피보험자 변경일')로 한다.
- (3) 회사는 피보험자 변경일 전일까지 변경 전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하며 피보험자 변경일부터 변경 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변경 후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한다. 이 경우 변경 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 내용 및 회사의 승낙기준 등은 변경 전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변경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4) 피보험자 변경의 신청 및 승낙은 약관 제 18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9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2 항 내지 제 4 항, 제 15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6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 15 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첨 제 1 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2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 3 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청약서의 서식